복합구조건물 요율적용(공장물건) 특별약관

제1조(복합구조건물의 정의)

복합구조건물이란 2종이상의 다른 구조로 된 하나의 건물을 말하며, 이 중 최열급에 해당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복합구조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30%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.

제2조(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)

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의 구조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제1조(복합구조건물의 정의)에 해당하는 복합구조건물로 인정된 경우에 부가합니다. 또한, 이 특별약관은 공장물건의 화재손해(실손보상, 비례보상)보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5조(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)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.

③ 보험계약이 해지,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
제3조(적용보험료)

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복합구조건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『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』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가 적용 전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4조(특별약관 내용의 변경)

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건물구조 변경으로 복합구조건물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5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.